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009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기타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 (1)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009
- (2) 회사는 자동갱신시 보험종목의 명칭에 갱신형임을 인식 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다르게 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 (1) 피보험자의 신체
- (2) 이 상품은 당사의 실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상품(이하, 당사상품이라고 함)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전환용 상품이며, 단체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여 당사상 품의 실손의료비담보가 중지 후 재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 약관 (갱신형)실손의료비	3년	전기납	23세~ (갱신종료 보험나이 ^{주1)} -보험기간)세	월납 연납
제도 성 특별 약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증상해부담보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 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	-	-	-

주1) 갱신종료보험나이 및 갱신주기

원계약 ^{주2)} 의 갱신형 여부	갱신종료 보험나이	보험 기간 ^{주3)}	갱신주기
갱신형	원계약의 갱신종료보험나이	1/2/3년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3년마다 계약해당일
비갱신형	원계약의 주계약 소멸시기		

주2) 원계약은 18.(4)에 기재된 당사상품을 의미

주3) 보험기간 1~2년의 경우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

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의 잔여기간
단, 원계약의 잔여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잔여보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2년, 잔여보험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으로 보험기간으로 정함
원계약이 비갱신형일 경우, 원계약의 주계약이 소멸되는 시점까지 보험기간으로 함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가. 적용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청약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료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나. 보험료할인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이전 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함.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 다른 보험료할인과의 합계액이 예정사업비(계약관리비용)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계약관리비용) 한도로 할인을 적용함

(2) 실손의료비 무사고 할인

가. 적용대상

이 상품의 가입일 이후 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유효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의 「무사고판정기간」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계약

나. 무사고 판정기간

- ① 최초갱신의 경우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함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회차 갱신이 도래한 경우는 갱신계약 보장개시일이 속한 달의 2개월전 1일부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함

다. 보험료 할인

회사는 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의 차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동안 무사고할인을 적용함. 다른 보험료할인과의 합계액이 예정사업비(계약관리비용)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계약관리비용) 한도로 할인을 적용함

(3)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외 기타 사항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함

8.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1)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갱신계약 보험료 통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통보함

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함
- 위의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및 연령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통약관에 적용할 위험률을 재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사용하며, 갱신보험료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해당계약의 보험연도 개시일부터 3년 동안 적용함

(2) 보험료 납입방법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함

(3) 갱신보험료의 대체납입 및 추가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부분보험료가 없는 상품으로 책임준비금에서의 대체납입이 없으며, 갱신보험료 변경 시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함

(4) 실손의료비 가입에 관한 사항

종합형의료비 가입자는 상해형의료비 및 질병형의료비를 동시가입 불가함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계약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 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짐.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2)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관한 사항

- 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만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 나.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를 설정(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17.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8. 기타

- (1)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2)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3)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4) 계약자가 해당 상품을 가입하기 전 중지한 실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아래의 당사상품을 원계약으로 하고, 원계약의 주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상품
(무)늘당신곁에사랑보험0711
(무)늘당신곁에사랑보험0804
(무)늘당신곁에사랑보험0904
(무)다이렉트늘당신곁에사랑보험0910
(무)늘아이곁에사랑보험0711
(무)늘아이곁에사랑보험0804
(무)늘아이곁에사랑보험0904
(무)다이렉트늘아이곁에사랑보험0910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009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104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106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111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810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904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908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910

- (5)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 가. 보험의 종류: 장기보험 / 제도성 특별약관
- 나. 보험의 명칭: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다.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은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이라 함)의 계약자(이하 ‘개인실손의 계약자’라 함)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 사이에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함

*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

라.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중지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계약중지’라 함)를 청약할 수 있음
 - 1)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실손을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중인 경우
 - 2) 상기 1) 개인실손의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이라 함)의 피보험자이고, 단체실손에 가입한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 단체실손의료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함
- ② 회사는 계약중지를 처리함에 있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종목을 중지처리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보험종목에 대해 중지처리를 함

(예시) 2009. 7. 31. 이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지 가능한 보장종목(개인실손)	보장종목(단체실손)
상해통원의료비	상해통원
상해입통원의료비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통원의료비	질병통원
질병입통원의료비	질병입원 질병통원
입·통원의료비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입원의료비	상해입원 질병입원
통원의료비	상해통원 질병통원

주)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세제, 비급여 자기

공명영상진단(MRI/MRA)의료비 특별약관의 전환 등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예시) 2009. 8. 1. 이후 제결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지 가능한 보장종목(개인실손)	보장종목(단체실손)
종합입원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통원(외래)	상해통원(외래)
	질병통원(외래)
종합통원(처방조제비)	상해통원(처방조제비)
	질병통원(처방조제비)

마.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 ① 상기 18.(5).라.에 따라 개인실손을 계약중지한 계약자는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계약재개’라 함)를 청약할 수 있음 다만, 단체실손이 종료된 경우에는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재개 청약을 하여야 함
- ② 단체실손 계약종료 전이라도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중지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중 단체실손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보장종목에 대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있음
- ③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이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주계약이 소멸*되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없음
 - * 주계약의 소멸 : ①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에는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함]
- ④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은 재개시점에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므로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범위 등은 중지된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음
 - *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란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당시에 판매했던 개인실손을 말함
- ⑤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의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의 계약재개를 승낙함
 - 1) 상기 18.(5).라.에 따라 개인실손이 중지된 후 피보험자의 단체실손 보장공백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 (보장공백기간 계산 시 금번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계약재개 청약일까지 기간은 제외됨)
 -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해지, 재가입 지연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만 단체실

손의 보장종목 변경은 보장공백기간으로 보지 않음

** 단체실손 종료일이란 계약재개 계약자가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 이전에 개인실손을 중지·재개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 종료일을 말함

- 2) 다음 가) 내지 라) 모두에 대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과 중지된 개인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회사가 중지된 개인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하지 않거나 또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등을 중지된 개인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봄)

다) 자기부담금 라)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 ⑥ 회사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등 상기 ⑤의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음. 다만,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중지된 보험종목은 소멸됨

바. 기타 사항

- ① 회사는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함
 - ②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중지 또는 계약재개를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 계약중지되는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계약중지·계약재개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③ 계약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음
 - ④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이하, 「조건부 특약」이라 함), 「특별조건부 특별약관」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음
 - ⑤ 조건부 특약의 경우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함
 - ⑥ 18.(5).라.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의 약관을, 18.(5).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각각 따름
 - ⑦ 회사는 계약중지 및 계약재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별

약관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⑧ 회사는 계약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6)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① 적용근거: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 ② 적용범위: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 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 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환 가능

(7) 판매채널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